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합55692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성승용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최송희

변론 종결2020. 9. 25.

판결 선고2020. 12. 1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969,378원 및 그 중 814,992,778원에 대한 2019. 7. 19.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8. 7. 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7. 3. 접수 제65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9. 6. 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6. 13. 접수 제62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11억 5,000만 원, 보증기한을 2016. 11. 11.까지로 정하여 피고회사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의 지급을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0. 24. 피고회사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2,600만 원, 보증기한을 2017. 10. 23.까지로 정하여 피고회사의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이하 1차 보증, 2차 보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때 피고 B은 피고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 등을 각각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약정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약금 및 기타 원고가 대지급한 채권보전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2019. 7. 19.부터 대위변제금의 약정손해금율은 연

8%이다.

나. 피고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D은행에 제출하고 D은행으로부터 2015. 11. 13. 1차 보증에 기해 11억 5,000만 원을, 2016. 11. 11. 2차 보증에 기해 2,6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다. 이후 1차 보증의 보증기한은 2019. 6. 10.까지로, 2차 보증의 보증기한은 2019. 10. 21.까지로 각각 연장되었다.

라. 피고회사는 2018. 9. 12.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9. 4. 2. 국세를 체납하였으며, 2019. 6. 11. 원금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19. 6. 20. 신용보증사고 발생 통지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9. 7. 19. 피고회사를 대위하여 D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814,992,778원을 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으로 3,276,210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회사가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은 2,700,390원이다.

마. 피고 B은 2018. 7. 2.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8. 7. 3.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 B은 2019. 6. 3.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9. 6. 13.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주문 제3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매매예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하며,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사. 피고 B은 피고회사의 대표자인 E의 남편으로서 피고회사를 실제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제이다.

아. 피고 B은 이 사건 각 매매예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회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820,969,378원(= 대위변제금 814,992,778원 + 채권보전비용 3,276,210원 + 위약금 2,700,390원)이 되므로, 주채무자인 피고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969,37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14,992,778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7.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9. 8.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당시인 2018. 7. 2. 및 2019. 6. 3.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및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위와 같은 사전구상금채권 등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2) 그리고 피고회사는 2018. 9. 12.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2019. 4. 2. 국세를 체납한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와 같은 사전구상금채권 등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3) 또한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9. 6. 11. 피고회사가 원금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가 2019. 6. 20. 신용보증사고 발생 통지를 받음으로써 원고에게 사전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의 자산상태나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기존의 대여금채권 3억 2,000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가등기를 경로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C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이상주

판사 김원목

판사 김희진

별지